

청렴은 문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



서대문구

서대문구 홈페이지
sdm.go.kr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대상자 행정처분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.

□ 관련근거
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징금의 금액)
- 같은 법 시행령 별표5

□ 행정처분 등 처리내역 (세부내역 : 붙임) : 총 103건

구분	과징금		과태료		주의	주의내역
	건수	금액(천원)	건수	금액(천원)		
택시	2	2,400	0	0	101	운송수입금 자료제출 지연

붙임 :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대상자 행정처분 내역서 1부. 끝.

주무관

임주홍

운수지도팀장

최영식

교통관리과장

문석만

안전건설교통국장

06/01
김종두

협조자

시행 교통관리과-16109 () 접수 ()

우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

/ <http://www.sdm.go.kr>

전화 330-1875 /전송

/ jumks21@sdm.go.kr

/ 부분공개(6)